



해양경찰청

# 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안내

◆ 원서접수 : 8.30.(금)~9.6.(금) <8일간>

원서접수사이트(<https://career.gosi.kr>)



## 채용 일정

시험공고 (*원서접수)	1차 시험		2차 시험	3차 시험	4차 시험	합격자 발표
	실기	필기	작성·체력	서류전형	면접 시험	
8.30.(금) * 8.30.(금)~9.6.(금)	9. 23.(월)~27.(금) ※ 발표: 10.2.(수)	10.19.(토) ※ 발표: 11.7.(목)	11.16.(토) ~ 21.(목)	11.27.(수) ~ 29.(금)	12.10.(화) ~ 13.(금)	12.24.(화)

※ 기능실기는 특공(전술·EOD), 구조 분야만 해당합니다.

## 채용 인원(총309명)

### ● 해양경찰청 소속 '경찰공무원' 채용

구분	경찰공무원[309]																							
	경위(20)		순경(289)																					
	경위공채(20)		해수안계고(5)	공채(94)	함정요원(94)				의무경찰(26)		구조(15)	구급(15)	특공(10)		수사(17)	관제(13)								
계	해양		일반		항해		기관		항해		기관		항해		기관		전술		EOD					
	남	녀	남	녀	남	녀	남	녀	남	녀	남	녀	남	녀	남	녀	남	녀	남	녀	남	녀	남	녀
309	8	2	8	2	3	2	85	9	51	6	34	3	17	9	15	15	6	4	17	13				
임용	본청												지방청		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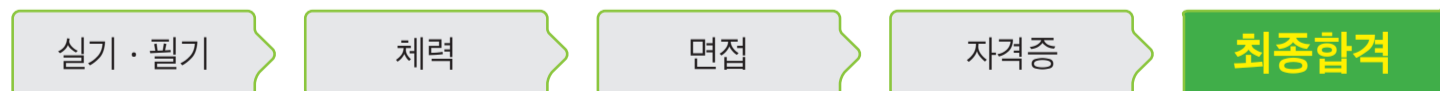
\* 지방청별 채용인원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.

## 채용분야별 필기·실기시험 과목

채용 분야	평가방법	시험방법
경위	필기시험 (과목당 40분형)	해양 ○ (필수4) 해양경찰학개론, 형법, 형사소송법, 해사법규 ○ (선택1) 항해학, 기관학 중 1과목 ○ (검정2) 한국어(2급 이상), 영어(기초점수 이상) 일반 ○ (필수3) 해양경찰학개론, 형법, 형사소송법 ○ (선택2) 범죄학, 행정법, 행정학, 헌법 중 2과목 ○ (검정2) 한국어(2급 이상), 영어(기초점수 이상)
해수안계고	필기시험 (과목당 20형)	항해 ○ 해사영어, 해사법규, 항해학 기관 ○ 해사영어, 해사법규, 기관학
공채채용	필기시험 (과목당 20형)	○ (필수2) 해양경찰학개론, 형사법 ○ (선택1) 해사법규, 헌법 중 1과목 ○ (검정2) 한국어(3급 이상), 영어(기초점수 이상)
함정요원 의무경찰	필기시험 (과목당 20형)	항해 ○ 해양경찰학개론, 해사영어, 해사법규, 항해학 기관 ○ 해양경찰학개론, 해사영어, 해사법규, 기관학
순경	실기시험 필기시험 (과목당 20형)	○ 실기 ▶ 특공(전술), 구조 육상(3) 턱걸이, 100m허들(양복), 2km 달리기 잠수(2) 정밀 중성부력 트림자세 유지, 수중에서 잠수장비 탈·부착 구조(3) 입영(중량 4kg착용), 구조수영(42m), 수영능력(100m) ▶ 특공(EOD) 육상 2km 달리기 구조 수영능력(100m) 잠수 수중에서 잠수장비 탈·부착 전문지식 성능시험, 기폭·약포 제작시험, 결선작업·폭파, 화약류 폐기 ○ 필기(실기합격자에 한함) ▶ 해양경찰학개론, 잠수이론* * 출제범위 : 잠수물리, 잠수생리, 잠수장비, 잠수작업
구급	필기시험 (과목당 20형)	○ 해양경찰학개론, 응급구조 실무* * 출제범위 : 응급환자평가, 환자 이송, 대량재난, 응급 의료관련 법령, 전문심장소생술, 전문소아소생술, 전문의상처치술, 내과 응급, 특수 응급
수사	필기시험 (과목당 20형)	○ 해양경찰학개론, 형법, 형사소송법
관제	필기시험 (과목당 20형)	○ 해양경찰학개론, 해사영어, 해사법규, 항해학

## 시험절차

### ● 최종합격자 결정



※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(시험의 합격결정)

▶ (경위 공채 등 필기 분야) 필기(50%) + 체력평가(25%) + 면접시험(25%) = 고득점순

▶ (구조, 특공) 실기(45%) + 필기(30%) + 면접시험(25%) = 고득점순

\* 동점자는 ① 취업지원대상자 → ② 필기 → ③ 실기 → ④ 면접 → ⑤ 체력 순으로 결정

### ● 체력검사 종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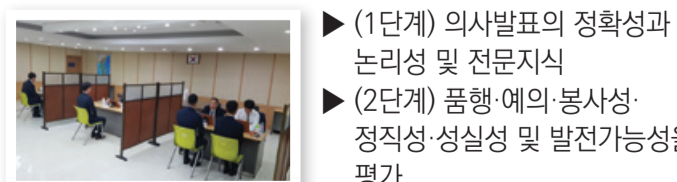
\* 체력검사 후 부정약물 사용 방지를 위해 응시인원 일부에 대하여 도핑테스트 실시(무작위)

### ● 종합적성검사



▶ 직무수행에 필요한  
자질과 적성을  
종합검정  
※ 면접에 참고 자료로 활용

### ● 면접시험



▶ (1단계) 의사표의의 정확성과  
논리성 및 전문지식  
▶ (2단계) 품행·예의·봉사성·  
정직성·성실성 및 발전가능성을  
평가

※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(<https://career.gosi.kr>) 확인

## 2024년 하반기 채용 분야별 자격 요건

구분	분야	응시자격
경위	공채채용	○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,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	해수안계고	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「선박직원법」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양·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자(졸업일이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이내인 졸업자에 한정한다)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함정요원	공채채용	○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,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	경력	○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▶ (공무원경력) 항해 분야는 군(軍)에서 함정(항해) 근무경력이 2년 이상, 기관 분야는 군(軍)에서 함정(기관)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※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경우,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면접시험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넘지 아니하여야 함
	자격증	▶ 항해 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, 기관 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
구조	의무경찰	*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로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
	경력	* 점수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▶ (공무원경력)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위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경우,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면접시험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넘지 아니하여야 함 ▶ 특수부대: [육군] 정보사(HID)-특전사-신속대응여단-특공연대-강습대대-제1산악여단-35특수임무대대(舊, 35특공임무대대) 군사경찰특수임무대-수색대대 [해군] 정보사(UDU)-특수전전단(SSU, UDT)-군사경찰특임반, [공군] 항공구조사(SART)-공정통제사(CCT)-군사경찰특임대, [해병대] 수색부대-군사경찰특임대
	자격증	▶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기타 수상구조사,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사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(1급 또는 2급),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(1급)
	구급	▶ 관련종목: 수영, 수중, 스킨스쿠버, 트라이애슬론, 철인3종, 근대5종 자격증 *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※ 관련분야: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·병원 응급실 소속 응급 구조사로 근무한 경력 / 「응급의료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경력 / 응급의료중사자, 의료관리자 양성 관련 학과(교)에서 교원, 강사로 응급의료 관련 교과목을 강의한 경력 / 소방기관(상황실, 상황관리센터 포함)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/ 국가(공공)기관(군(軍)은 의무병, 의무부사관 이상 또는 군무원(응급구조 담당))·사업체 구급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/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상주하여 근무한 경력 - 소속(부서)·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
순경	공채채용	○ 해양대테러작전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▶ (공무원경력)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위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경우,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면접시험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넘지 아니하여야 함 ▶ 특수부대: [육군] 정보사(HID)-특전사-신속대응여단-특공연대-강습대대-제1산악여단-35특수임무대대(舊, 35특공임무대대) 군사경찰특수임무대-수색대대 [해군] 정보사(UDU)-특수전전단(SSU, UDT)-군사경찰특임반, [공군] 항공구조사(SART)-공정통제사(CCT)-군사경찰특임대, [해병대] 수색부대-군사경찰특임대
	자격증	▶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
	특공	○ 해양대테러작전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▶ (민간경력)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▶ (공무원경력)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※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 합산 불가 ※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경우,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면접시험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넘지 아니하여야 함 ※ 관련분야: 공항공사·항만공사 폭발물처리 담당, 군(軍) 폭파 주특기(교육 이수기간 제외)
관제	EOD	▶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기능사 전자응용 기능장 전자기기 산업기사 전자 기능사 전자 기타 1급 화약류제조(관리) 보안책임자 면허, 2급 화약류제조(관리) 보안책임자 면허
	수사	○ 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(복수전공 포함, 부전공 제외) ※ 관련전공: 경찰행정학(경찰학사, 경찰법학사, 경찰행정학사, 해양경찰학사 등 전공·학과·학위명에 '경찰'이 명시되면 인정), 법학
관제	자격증	○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▶ 5급 항해사 이상 면허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※ 항해사 면허: 상선면허, 어선면허 모두 포함 ※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로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경력에 산입(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) ▶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급 항해사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 ※ 선박교통관계 관련 교육: 「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계 교육에 관한 고시」 참고

※ 본 포스터는 단순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